



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

**나노중합기술원**  
NATIONAL NANOFAB CENTER

대구대학교와 나노중합기술원 간

#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

2024년 5월 29일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291



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

**나노중합기술원**  
NATIONAL NANOFAB CENTER

대구대학교 총장

나노중합기술원 원장

박 순 진

박 흥 수

박 순 진

박 흥 수

대구대학교와 나노종합기술원은 반도체 분야 산업육성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한다.

#### 제1조(목적)

본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나노종합기술원 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, 유관 분야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기본원칙)

1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#### 제3조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.

1. 교육 콘텐츠 공유, 교육과정 자문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지원
2. 관련 산·학 협력 기획,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
3.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교류 및 서비스에 협력
4. 양 기관의 학술회의 공동 개최,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정보 교환
5. 양 기관 간 협의로 시설 공동 사용 지원
6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

#### 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공동연구와 교류활동으로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을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 관련된 상세 내용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다.

#### 제5조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 종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### 제6조(해지 및 유효기간)

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협약 내용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일방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3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, 상당한 기간(1개월)을 정해 그 시정을 서면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, 다른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.

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당해 협약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.

### 제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

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### 제8조(협약 변경)

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단,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,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### 제9조(협약의 해석)

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, 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대구대학교와 나노종합기술원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,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